

해외문화홍보원 직원 비위혐의 조사결과

□ 조사개요

- (조사기간) 2017. 4. 5. ~ 4. 21.
- (조사인원) 감사담당관실 2명
- (조사내용) 성추행, 폭언, 복무위반 등 비위혐의

□ 조사결과

① 성추행 등 부적절한 언행

- 2017.2.16. 08:00경 사무실에서 성추행 및 2015년 초 성희롱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함

② 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

- 전임 기관장, 담당 과장 등(4명) 및 소속 직원들에게 욕설, 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함

③ 복무규정 등 위반

- 2016.9.~2017.3.까지 근무상황(유연근무·연가·조퇴 등) 미처리 후 14회 조기퇴근*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함

* 000은 주말(금요일)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 무단 조기퇴근 하였음을 인정하고, '16.9.2. 이전에도 두 달에 한 두 번씩 무단 조기퇴근을 하였다고 진술

- 2017.2월 신규 채용된 계약직원(5명)들에게 6개월간 출근(08:30 이전) 및 퇴근(19:00 이후)하도록 지시*함

* 000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부당 지시를 인정함. 다만, 동의(구두) 하에 수습기간을 감안해 기사작성 품질제고를 위한 조치였다고 진술

- 기사 취재 시 '책자' 등 물품을 받아오도록 지시함

□ 조치계획

- 000의 상습적인 부적절한 언행, 성추행 등 행동강령 위반, 복무규정 위반 등 중대성을 고려하여 '중징계' 요구